

의안번호	2200506
의 퇴 인	이연희 의원
회 답 일	2024.6.17.
추 계 번호	23B08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억 6,4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9억 2,700만원(연평균 1억 8,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41조의2)	464	0	0	464	0	927	185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의2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1조의2(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유사 실태조사의 평균값을 토대로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임
 - 본 추계서는 고용노동부의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의 평균값을 준용¹⁾하여 추계하며, 추계기간 동안 실태조사 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1) 자료: 고용노동부

① 고용노동부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사업개요: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고용 및 미고용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횡단면 조사(1년 주기)
- 근거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²⁾
- 소요재정: 2023년 기준 4억 6,500만원

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 사업개요: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이행 상황, 예방활동, 위험노출정도, 정신건강 등 산업안전보건실태를 조사(3년 주기)
- 근거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³⁾
- 소요재정: 2021년 기준 4억 6,200만원

- 개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과 2028년에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억 6,4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9억 2,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41조의2)	464	0	0	464	0	927	185

-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